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대안)

의안 번호	208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8월 30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7년 6월 9일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1900)과 2017년 8월 14일 서울시장이 제안한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1984), 이상 2건을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(2017년 8월 30일)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젠더자문관 운영근거를 법제화하여 시 전반의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,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며, 성평등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, 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 대상에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 사안을 포함 함 (안 제12조)
- 젠더자문관 운영 규정 신설 함 (안 제13조)
- 성평등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
-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근거 마련 함 (안 제35조의2)
-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함 (안 제39조의2)
- “성평등 활동 지원센터” 설치 근거 규정 함 (안 제42조 내지 제44조)
- 민간위탁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준용 근거 마련 함 (안 제 45조)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제3호 중 “사업의”를 “사업 및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부터 제17조까지, 제18조,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, 제1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젠더자문관의 운영 등)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“젠더자문관”을 둔다.

②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평등 정책 발굴
2. 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
3.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, 환류 및 보고서 작성
4. 주요사업 추진부서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
5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
③ 젠더자문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15조(중전의 제14조)제1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30조(중전의 제29조) 중 “제38조” 를 “제39조” 로 한다.

제34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5조, 제36조, 제37조 및 제38조로 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) ① 시장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

1. 시행중인 조례·규칙

2. 시 소관정책

3. 「지방공기업법」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·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제3호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·선정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상과제가 선정되면 해당기관에 분석평가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결과에 대해 매년 시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
⑦ 시장은 제6항의 시행여부 점검결과를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8조(중전의 제37조)제1항 중 “제34조 부터 제36조” 를 “제35조 부터 제37조” 로 한다.

제41조를 삭제하고, 제38조, 제38조의2, 제39조, 제40조 및 제40조의2 를 각각 제39조, 제39조의2, 제40조, 제41조 및 제41조의2로 한다.

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.

제39조의2(중전의 제38조의2) 본문 중 “2017년 12월 31일” 을 “2022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제40조(중전의 제39조)제1항제2호 중 “제29조” 를 “제30조” 로 한다.

제42조 앞에 “제6장 보칙” 을 삭제한다.

제41조의2 다음에 “제6장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” 를 삽입한다.

제6장에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(설치)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(이하 ‘센터’ 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3조(기능)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2.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·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3.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

4.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4조(운영비 지원 및 정산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위탁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·보고하여야 한다.

제44조 다음에 “제7장 보칙”을 삽입한다.

제7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6호 중 “서울특별시여성상”을 “서울특별시성평등상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 중 “서울특별시여성상”을 “서울특별시성평등상”으로 한다.

[별표 1]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중 “서울특별시여성상” 을 “서울특별시성평등상” 으로 한다.

②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 제28조” 를 “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 제29조”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분과위원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</u> : 조례의 제·개정, 정책, <u>사업의</u> <u>성별영향분석평가에</u> <u>관한 사항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2조(분과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사업 및 제35조의2제1항에</u> <u>따</u> <u>른 --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3조(젠더자문관의 운영 등) ①</u> <u>시장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</u> <u>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</u> <u>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“젠더</u> <u>자문관”을 둔다.</u></p> <p><u>②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</u> <u>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<u>1.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</u> <u>평등 정책 발굴</u></p> <p><u>2. 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</u> <u>의 자문 및 협의</u></p> <p><u>3.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, 환</u> <u>류 및 보고서 작성</u></p> <p><u>4. 주요사업 추진부서 직원 성</u></p>

제13조 (생략)

제14조(시정참여 확대)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%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5조 ~ 제28조 (생략)

제29조(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)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·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이나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

인지 교육 실시

5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③ 젠더자문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14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

제15조(시정참여 확대) ① -----

----- 하며 위원회는 이의
준수를 권고 할 수 있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 ~ 제29조 (현행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)

제30조(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) -----

----- 제39조-----

라 한다)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0조 ~ 제33조 (생략)

제34조 (생략)

제35조 · 제36조 (생략)

<신설>

-----.

제31조 ~ 제34조 (현행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)

제35조 (현행 제34조와 같음)

제36조 · 제37조 (현행 제35조 및 제36조와 같음)

제35조의2(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)

① 시장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

1. 시행중인 조례·규칙

2. 시 소관정책

3. 「지방공기업법」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·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제3호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·선정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상과
제가 선정되면 해당기관에 분석
평가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
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
여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
시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기한을
정하여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
은 기관의 장은 기한이 지난 후
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에게
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기
관에서 제출한 결과에 대해 매
년 시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
다.

⑦ 시장은 제6항의 시행여부 점
검결과를 제12조제3항제3호에
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
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7조(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
위한 지원) ① 시장은 제34조
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
성별영향분석평가, 성인지 예
산,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
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
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

제38조(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
위한 지원) ① ----- 제35조부
터 제37조-----

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38조 (생략)

제38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
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
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
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
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
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
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9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
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29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
체가 수행하는 사업
- 3·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0조 (생략)

제40조의2 (생략)

제6장 보칙

<신설>

제41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
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
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
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9조 (현행 제38조와 같음)

제39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
----- 2022년 12월 31일
-----.

-----.

제40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30조-----

3·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1조 (현행 제40조와 같음)

제41조의2 (현행 제40조의2와 같
음)

<삭제>

제6장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
지원센터

<삭제>

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·범위와 위탁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42조·제43조 (생략)

<신 설>

제42조(설치)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3조(기능)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2.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·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3.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
4.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6조·제47조 (현행 제42조 및 제43조와 같음)

제44조(운영비 지원 및 정산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

<신 설>
<신 설>

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
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
위탁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
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·
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장 보칙

제45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
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
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
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
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
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
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
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
다.